

제주지방법원 2019. 7. 25 선고 2019가단250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7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136㎡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. 7. 19. 접수 제723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김태우

별지